

■ 최신 법령 ■

[조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등 개정

조선영 변호사 | 임승혁 회계사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개정 - 개정특수관계법인 간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기준 마련 등

가. 법률에 특수관계법인 간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정상거래로 보는 비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법인의 사업연도별 매출거래에서 특수관계법인과 거래비율이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경우에 과세할 수 있도록 하고, 특수관계법인의 범위에 법인의 자회사 등을 제외하였습니다. 또한 과세대상자가 법인에 대해 간접적으로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의 주식보유비율의 계산방법 등 그 밖에 증여의제이익의 계산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였습니다(영 제34조의2 참조).

나. 다운로드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대통령령 제23591호, 2012. 2. 2. 시행)

2.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 과세대상 신종 금융상품의 기준 및 비거주자에 대한 정상가격 기준 마련 등

가. 법률에 신종 금융상품을 과세하는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과세대상 신종 금융상품의 구체적인 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동일한 금융회사 등을 통하여 이자·배당소득 발생상품의 거래 등과 파생상품 계약이 실질상 하나의 상품과 같이 운용되고, 파생상품이 이자·배당소득 발생상품의 원금 및 이자 등을 기초로 하는 경우 등이 과세대상이 됩니다(영 제26조제5항 및 제26조의3제3항 참조).

나. 거주자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기준과의 형평성을 도모하고자,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가 특수관계에 있는 비거주자·외국법인에 유가증권 등을 양도하는 경우 정상가격과 거래

가격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정상가격의 100분의 5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정상가격을 수입금액으로 본다는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영 제183조의2제5항 참조).

다. 다운로드 :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대통령령 제23588호, 2012. 2. 2. 시행)

3.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 - 합병법인의 합병차익 자본전입시 과세되는 잉여금의 범위 마련 등

가. 이익잉여금 등을 합병 전에 피합병법인이 자본으로 전입하는 경우 합병에 의하여 의제배당으로 과세가 이루어지는 반면, 합병 후 합병법인이 합병차익을 자본으로 전입하는 경우에는 비과세되어 왔는바, 이에 대해서도 의제배당으로 과세되도록 개선함으로써 합병 전후의 과세 형평성을 도모하였습니다(영 제12조 참조).

나. 공익법인의 과다인건비를 제한하고 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산입하는 장학법인과 사회복지법인 등 비영리내국법인이 개별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총 급여액이 연간 8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은 경우 외에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지출대상에서 제외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영 제56조제11항 내지 제14항 참조).

다. 다운로드 :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대통령령 제23589호, 2012. 2. 2. 시행)

4.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 임대사업자의 취득세·재산세 경감 등

가. 전월세 시장의 안정화를 도모하고자, 임대사업자가 임대를 목적으로 오피스텔을 취득하는 경우 현행 임대주택과 같이 취득세와 재산세를 전용면적에 따라 면제 또는 100분의 50까지 경감하는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제31조제1항, 제3항 참조).

나. 다운로드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제11397호, 2012. 3. 21. 시행)